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09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박균택 · 박지원 · 서영교
김의겸 · 김남희 · 김한규
이성윤 · 김용민 · 김동아
김기표 · 허 영 · 박정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조사·심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심리”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수사하거나 결정”을 “처리”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검찰청”을 “소속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수사”를 “수사·공소”로 한다.

제41조제1호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 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u>조사</u> 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다만, <u>조사</u> 도중에 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 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 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 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u> ----- <u>. ---사실관계 확인이 나 면담 또는 조사</u>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u>조사·심리</u> 에 관하여는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 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17조(준용) ①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심리</u> ----- ----- ----- ----- ----- ----- ----- ----- ----- -----.

② (생 략)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생 략)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처리-----

-----.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

---소속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
-----수사·공소-----

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략)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

-----.

1. -----

-----지방공소청-----

사에게 송치 2. (생 략)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생 략)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u>검찰청</u>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2. (현행과 같음)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지</u> <u>방공소청</u>----- ---.
--	--